

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제정 1991년 4월 16일 의회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산시의회의원(이하 “오산시의원”이라 한다)의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우선의 의무) 오산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오산시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의 의무) 오산시의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오산시의원은 공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친절 공정의 의무) 오산시의원은 시민전체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